

중국, 항저우 아시안게임 23년 9월
→ 행사장 휴대금지 및 제한품목
23년 7/19 기준

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23.7.2.(일) 아시안 게임 입장권 소지자 주의사항을 게재한 바, 제5조 행사장 휴대 금지 및 제한 등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적용 대상

- 동 정책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모든 참가자와 경기장에 적용됨.

2. 금지 및 제한 품목

가. 금지 품목

- 휴대 금지 품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및 법규 상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가리킴. 보안요원은 금지된 물품을 발견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, 규정에 따라 통제하고,公安기관은 관련 물품과 인원을 법에 따라 처리함.

- (1) 총기, 탄약, 폭발물
- (2) 모조총, 석궁, 단도 등 통제 대상 도구
- (3) 폭죽, 휘발유, 알코올 등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
- (4) 맹독성, 부식성 등 유해 화학 물질 및 방사성 물질
- (5) 유해생물 제제, 감염병 병원체 등 유해물질
- (6) 헤로인, 코카인, 대마초, 필로폰 등 각종 마약
- (7)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및 법규 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품목

나. 제한 품목

- 휴대 제한 물품이란 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장소의 안전과 순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, 휴대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음. 반입 제한 물품은 소지자가 자체 처리함.
- (1) 유리병/컵, 보온병, 아이스박스 등 깨지기 쉬운 물품 및 다양한 용기
- (2) 모든 종류의 부드럽고 단단한 포장 음료, 특히 알코올 음료; 명백히 정상적인 사용량을 초과하는 던지기 쉬운 식품 (예: 과일, 계란 등)
- (3) 정치, 인종, 종교, 상업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《아시안게임 이사회 정관 및 규칙》, 《아시안게임 장애인위원회 정관》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현수막, 슬로건 및 기타 선전용 물품
- (4) 항저우 아시안게임 또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의 깃발; 펼쳤을 때 크기가 1*2미터를 초과하는 깃발; 1미터 초과 깃대
- (5) 유모차,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를 제외한 모든 이동 수단 (예: 전기자전거, 오토바이, 자전거, 스쿠터, 밸런스카, 스케이트보드)
- (6) 동물 (안내견 제외)
- (7) 호루라기, 나팔, 북을 포함한 악기
- (8) 손잡이가 긴 우산과 뾰족한 우산 등 상해를 입히기 쉬운 막대기 및 날카로운 물체 (장애인이 사용하는 목발, 인공사지, 블라인드 스틱 등 제외)
- (9) 배트, 라켓, 원반 등 스포츠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및 이와 유사한 물품
- (10) 관객석의 폭을 초과하는 부피가 큰 가방, 핸드백 등
- (11) 외부발판 및 삼각대를 포함하여 허가되지 않은 전문 촬영 장비 (가정용 소형 휴대용 카메라 장비 제외) 및 카메라용 스탠드; 전문 촬영 및 카메라 장비는 소형 일안 카메라, DSLR 카메라 등 모든 렌즈 교환 가능 장비를 가리킴.
- (12) 라디오, 레이저 장치, 확성기 등 공연 및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가 선수, 기술자 및 코치의 주의를 분산시키고, 아시안게임의 전자 신호나 클러스터 신호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허가되지 않은 물품

- (13) 무선전송장비 전용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무선통신기, 무선전송장비
(공중이동통신단말기-휴대폰, 컴퓨터 내장형 무선랜카드, 노트북, 태블릿PC, 자동차 원격키 및 카메라의 무선 원격제어장치, 초소형동력단거리무선전송장비의 개인 사용 생물의학 원격측정, 의료이식 및 관련 부대장치, 스마트워치·스마트밴드·블루투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제외)
- (14) 드론 등 소형항공기 및 리모컨, 각종 모형 및 원격제어장치, 연, 공명등 등 공중부양물
- (15) 라이터, 성냥 및 기타 점화장치, 주사기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물품

다. 특별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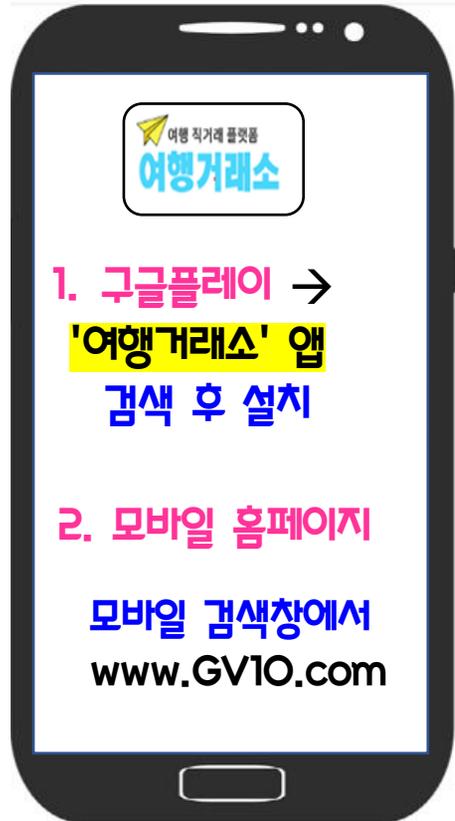
- (1) 노트북 등 전자기기 휴대 시 시험테스트를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보안검색을 통해 입장해야 함.
- (2) 장애인은 필수 및 소량의 구급약품, 교정기 및 필수의료용 주사기, 소독제, 윤활액, 도뇨관, 집뇨기 등을 휴대할 수 있으며,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필수 휠체어 정비 도구 등을 휴대할 수 있음.
- (3) 개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휴대해야하는 100ml 미만의 액체제 및 의료용 스프레이는 보안검사요원의 감독 하에 소지자가 직접 사용하여 확인한 후 보안검사를 통해 반입할 수 있음.

3. 여타 내용

-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기 주의사항 중 제5조 이외에도 조직위가 밑줄 등으로 강조한 아래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 등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음.
 - 제3조는 규정 위반 시 입장 불허, 퇴출 요구, 입장료 환불 거부 등 조치에 대한 규정
 - 제6조는 슬로건 제창, 현수막 걸기, 홍보물 배포, 비참가국 국기 게양 행위를 포함한 정치,종교, 인종 선전 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
 - 제7조는 입장권 소지자의 조직위에 대한 △촬영, 신원 확인, 기록 △법률로 허용하는 최장 기간동안 어떠한 형식, 매체, 기술로 상시 사진 또는 기록의 무료 사용 △지재권 및 기타 관련 권리의 무상양도에 대한 동의 규정
 - 제8조는 입장권 구매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, 개인정보의 저장에 대한 동의 규정

출처 : 주 상하이 한국 영사관 (230719)

갤럭시 폰에서



모바일 검색창에서
모바일 홈페이지
www.GV10.com

-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
-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
-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
- 현지 생생정보
-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
-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!!

아이폰에서

